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 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확인 및 통보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정책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법제조정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전시법령정비 업무의 완료 시기에 맞춰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존속 기한을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예산·조직·규제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의 상충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 및 통보(이하 이 항에서 “법제조정 모니터링”이라 한다)
2. 법제조정 모니터링에 따른 부처 간 협의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지원
4.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6. 법제조정 모니터링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총리령 제205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10월 31일”을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조정지원팀장은 2029년 6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제조정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제조정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분장한다.

1. 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법제조정법제관
2.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법제정책국)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6조(법제정책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예산·조직·규제와 관련된 사항 및 소관 업무의 상충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 및 통보(이하 이항에서 “법제조정 모니터링”이라 한다)</u> <u>2. 법제조정 모니터링에 따른 부처 간 협의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u> <u>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지원</u> <u>4.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u> <u>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u> <u>6. 법제조정 모니터링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u>